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명령의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,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형사소송규칙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재판장이 보호관찰,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함(안 제147조의2제1항)

4.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7조의2제1항 중 “설명하여야 한다”를 “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. 3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7조의2(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, 보호처분의 기간)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,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 또는 수강(이하 "보호관찰등"이라고 한다)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략)	제147조의2(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, 보호처분의 기간)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,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 또는 수강(이하 "보호관찰등"이라고 한다)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1360